

## 경운대학교 국제교육원 운영규정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국제교육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업무 및 사업)** 국제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와 사업을 담당한다.

1. 대학 국제교류와 관련한 사업
2. 지역사회 및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과 관련한 사업
3.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사업
4.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 업무
5. 기타 국제교육원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

### 제2장 조직과 업무

**제3조(원장)** ① 국제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되 우리대학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교육원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**제4조(조직)** ① 국제교육원 산하에는 글로벌교류협력센터, 글로벌교육센터를 두며 사무를 지원한다.

② 센터에는 각각 센터장을 두며, 우리대학 전임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글로벌교류협력센터와 글로벌교육센터는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.

④ 국제교육원의 사업수행을 위해 한국어교원과 계약직원 등을 둘 수 있으며 임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대학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.

⑤ 제2조 업무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⑥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.

**제5조(글로벌교류협력센터)** 글로벌교류협력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장단기 국제교류협력계획 수립
2. 국제학술교류협약 및 외국대학과의 교류 업무
3. 국제교류 협정에 의한 학생파견, 연수 등 교수, 학생교류에 관한 업무

4. 국제학술회의 및 초청인사 지원
5.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입시 지원 업무
6. 외국인 유학생 지원 관련 업무(외국인 학생관리, 행정지원 및 상담)
7. 교육국제화인증제 관한 업무
8. 교류협력 관련 정부사업 유치 및 운영
9. 중외합작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10.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및 체류관련 업무
11. 그 밖에 글로벌교류협력센터 운영에 관련한 사항

**제6조(글로벌교육센터)** 글로벌교육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한국어 연수교육
2. 한국어 연수 교육계획 수립, 유치, 선발 및 운영
3. 한국어 연수 교육과정 및 한국어 교재 개발
4. 한국어 연수생 학사관리, 체류지원 및 한국어 교육 강사 관리
5. 한국어 행사 기획 및 진행
6.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 특별교육과정 운영
7. 한국어 교육 관련 정부사업 유치 및 운영
8. 경운대학교 외국인 한국어 입학시험 출제 및 시행
9.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시행
10. 한국어교원 교육실습 운영 및 관리
11. 한국어교육 학술대회 개최
12. 외국어 교육과정 수립 및 교재개발
13. 영어 모의시험 실시 및 운영
14. 학생, 교직원, 일반인 실용외국어 교육과정운영
15. 위탁강좌 운영
16. 다문화 교육 사업 유치 및 운영
17. 해외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
18. 그 밖에 글로벌교육센터 및 외국어 교육에 관련된 사항

### 제3장 위원회 운영

**제7조(운영위원회)** ① 국제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 위원은 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국제교육원장, 글로벌교류협력센터장, 글로벌교육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

는 위촉하며, 국제교육원장은 위원장이 된다.

③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중임 할 수 있으며 임기 기간 중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운 위원이 임명된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⑤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본운영계획
2. 규정의 개폐
3. 신규사업 신설 및 기존 사업 폐지
4.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.

## 제4장 재정 및 기타사항

**제8조(재정)** 국제교육원의 재정은 보조금, 수강료, 학교비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**제9조(직무의 위탁)** 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 중 실용외국어교육 및 모의시험에 관한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**제10조(운영세칙)**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<2021.12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